

제211회 임시회

2003. 4. 22(화)

審 査 報 告 書

○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教育社會委員會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4월 2일(충청북도교육감)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4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2003년 4월 17일(제1차 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관리국장 이장길)

가. 제안이유

- 먼저,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,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(2002. 11.29)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것 임.

나. 주요골자

-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 내지 8퍼센트에서 연 4내지 6퍼센트로,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8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각각 인하 조정하며
- 공유재산의 대부료, 사용료,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을 연 15퍼센트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퍼센트까지로 차등화하고, 연체료 부과기간은 60월 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 임.

3. 검토결과 요지(전문위원 임석규)

-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(2002.11.29)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자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89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 이유

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 골자

-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내지 8퍼센트에서 연 4내지 6퍼센트로,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8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각각 인하 조정함(안 제22조제1항·제2항 및 제3항).
- 공유재산의 대부료, 사용료,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퍼센트로 하던 것을,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까지로 연체료율을 차등화하고,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).
- 관사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「교육감, 부교육감, 교육장, 청·소의 장,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」에서 「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」로 함(안 제52조제1호).

개정근거

-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7788호, 2002. 11. 29.)
-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(행정자치부, 2002. 12. 26.)

개정조례안 : 불입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입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중 "5퍼센트의 이자"를 "연 4퍼센트의 이자"로 한다.

제22조제2항 및 제3항중 "연 8퍼센트의 이자"를 "연 6퍼센트의 이자"로 한다.

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대부료, 사용료,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(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정수하지 아니한다.

1.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: 연 12퍼센트
2.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: 연 13퍼센트
3.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: 연 14퍼센트
4.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: 연 15퍼센트

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연체료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적절 사용하는 경우

부 칙

- ①(시행인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1항·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.
- ③(매각대금의 연체료 부과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분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)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종채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채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) ①		①
1.~4. (생략)	1.~3. (생략)	1.~4. (현행과 같음)		1.~4. (현행과 같음)
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채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	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채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	②		②
1.~5. (생략)	1.~5. (생략)	1.~3. (현행과 같음)		1.~3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생략)	③		③
제28조(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) ①대부료, 사용료,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,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(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	제28조(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) ①대부료, 사용료,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(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제28조(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) ①대부료, 사용료,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(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	①대부료, 사용료,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(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1.~5. (현행과 같음)		1.~5. (현행과 같음)
		④ (현행과 같음)		④ (현행과 같음)
		1.연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: 연 12퍼센트		1.연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: 연 12퍼센트
		2.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 : 연 13퍼센트		2.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 : 연 13퍼센트

현행	개정안
<p><신 설></p> <p>㉔ (생 략)</p> <p>제52조(사용료의 면제) (생 략)</p> <p>1. 교육감, 부교육감, 교육장, 청·소의 장, 시설관리사가 직접사용하는 경우</p> <p>2~4 (생 략)</p>	<p>3.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: 연 14퍼센트</p> <p>4. 연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: 연 15퍼센트</p> <p>㉔ 제1항에 의한 연체료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㉕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52조(사용료의 면제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</p> <p>2~4. (현행과 같음)</p>